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5
----------	------

발의연월일 : 2016. 10. 24.  
발의자 : 우상호 · 유은혜 · 김현권  
전혜숙 · 서영교 · 김영호  
조승래 · 김정우 · 추혜선  
이정미 · 신경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로 참여제한 기간을 강화하였음.

이는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등을 일부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 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 다.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 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계을리한 자를 추가함(안 제1 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5년”을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계을리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5. ~ 7. (생 략)

② • ③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